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2022

목차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5

-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해설 7
-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34

제2장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1

- 1.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56
- 2. 전담 안전보건 조직 58
- 3.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60
- 4.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64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예산, 성과평가 65
-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9
-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72
- 8. 비상대응 매뉴얼 77
- 9.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78
- 10.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준수 86
-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88

제3장 사업장 대응방안 95

- 1. 안전보건절차서 97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규정 99
- 3. 위험성평가 절차 100
- 4. 안전예산 운영규정 102

목차

제4장 노동자의 참여 및 알 권리 105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108
2.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109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111
4. 안전점검 참여	112
5.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114
6.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11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18
8. 노동자의 알 권리	119

부록 123

1.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125
2. 중대재해처벌법 준법 점검표	144
3. 산업안전보건법 준법 점검표	146
4. 계층별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	149
5.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연간계획	155
6.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57
7.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163
8. 고용노동부 활용 서식 모음	196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해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해설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연평균 36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 '중대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산업현장의 재해뿐 아니라,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법은 4개의 장과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는 적용범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안전보건교육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와 제4장 보칙에는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손해배상의 책임,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미비의 인과관계 인정 시 처벌 등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고 요약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시행당시 “㉠개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시행한다.

[표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직업성 질병자)
	제3조(공중이용시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부칙<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1) 목적

법	시행령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이 법을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정의

법	시행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6. 생략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p>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1)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차이가 있으며 [표 2]와 같다. 한국노총의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중대산업재해”위주로 서술한다.

[표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p>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p> <p>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p>	<p>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p> <p>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p>3. “중대시민재해”란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핵심포인트

- » 중대산업재해 다목의 “동일한 사고”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 » 중대산업재해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
- » 종사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산재보험보상 보상 대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아니다.

(3) 종사자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의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쿼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다만,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포인트

- » 모든 공무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보호, 처벌 등)으로 특히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처벌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제외 조항이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해당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4) 사업주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 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 규정에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한다.

핵심포인트

- »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자 및 노동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 » 기업의 리더가 경영의 중심에 안전보건을 두고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체제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핵심포인트

- »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공장장, 현장 소장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 »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경우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다.
- » 다만,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대표이사만큼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상임이사에게는 위임할 수 있다.
- » 시공사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이다. 건설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다.

3) 적용범위

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적용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한다.

핵심포인트

- » 사업장별 인원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가 5인 미만이면 법 적용제외이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일부 법 적용 업종, 사무직 노동자만 근무, 비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 »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다. 발주자와 시공사의 계약금액,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각 50억 이상이면 법 적용된다.
- » 개인사업주의 노동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받는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말한다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된다. 다만,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노동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노동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노동자는 5인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대상이다.
- 파견노동자는 파견중인 노동자의 파견노동자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노동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 사무직노동자는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자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주 노동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다.

4)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시행령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시행령
	<p>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p> <p>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p> <p>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p> <p>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p> <p>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법	시행령
	<p>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p>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법 제4조제1항제1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핵심포인트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낸다.
-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 »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시행령 제4조제1호)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할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린다.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한다.(시행령 제4조제2호)
 -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핵심포인트

- » 전사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인 전담조직은 본사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겸임할 수 없다.
- » 겸임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므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 »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 겸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 또한, 전담조직은 소방, 환경, 시설관리, 전기, 일반행정, 생산관리 등의 업무도 겸임할 수 없다.
- » 전담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기존 안전환경팀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담조직원은 안전보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포인트

- » 반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은 정기(년 1회) 위험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운영·개선되어야 한다.
- » 다만, 수시 위험성평가를 누락할 경우 의무이행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샘플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은 안되므로 전 대상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역할

- »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에 따라 실제 개선이 되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서 실제로 필요한 조치까지 하여야 한다.
- »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실시에 따른 개선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위험성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 »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해서 그에 따라 실제로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4조제4호)
 -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3] 안전보건 예산내역 예시

•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비용
•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비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안전보건 인력의 유지비용
•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안전보건 조직 운영비용
•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안전보건 활동비용

핵심포인트

-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집행은 법상 안전예산으로 인정된다.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시행령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노동조합 역할

» 안전보건 조직이 업무분장에 따라 안전보건업무에 전담하는지 여부와 안전예산이 계획된 편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역할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법상 인원수 이상 배치되고 업무분장에 따라 전담하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수행 시간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시행령 제4조제7호)
 -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핵심포인트

- » 기업의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 » 유해·위험요인을 찾기 위해 종사자의 의견청취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절차를 만들고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 회, 도급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 수급업체(사내 상주)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노동조합 역할

-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 »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제도를 거쳐서 나온 의견이나 그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시행령 제4조제8호)

핵심포인트

» 반기 점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6월 30일과 하반기 12월 31일까지이다.

노동조합 역할

-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매뉴얼, 그리고 위험요인의 제거와 개선(시정)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이는 노동자의 참여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업중지권과 그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사업주가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시행령 제4조제9호)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노동조합 역할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만족하는 지와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반기마다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법 제4조제1항제2호)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한다.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위와 같은 개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묵인이고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포인트

» 재발방지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3일 이상 휴업)로 분류되는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법 제4조제1항제3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한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노동조합 역할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법평가(진단)에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점검에서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점검(진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포함시켜 조합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핵심포인트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법의 해당 조항이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노동조합 역할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의 준수 및 교육내용 등이 업무특성과 위험요인에 맞는지를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사업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안전관리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 건설기술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5)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법	시행령
<p>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이다.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핵심포인트

- »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므로 임대인은 법 대상이 아니다.
-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 » 발주자는 민법상 도급이지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는 시공사이므로 법 제외이다.
- »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상 조치 요구는 파견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오해소지가 있으니 수급인 감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 처벌

법	시행령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산업재해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핵심포인트

- »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조건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것(결재)으로 의무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 »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반복 위반자를 묵인할 경우 이행의무의 결함에 해당된다.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산업재해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

-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
 -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 ④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 ⑤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 따라서, 산업재해치사상죄는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결과와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를 위반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처벌받게 된다.
 - 산업재해치사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산업재해치사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재범의 판단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본다.
 -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고의로 인정한다(대법원 202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6) 양벌

법	시행령
<p>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0.2.25. 선고 2009도5824 판결).

핵심포인트

-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및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31조제1항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제118조제4항 및 제5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이다.

7)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시행령
<p>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p> <p>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p>

법	시행령
	<p>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p> <p>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형 확정 통보

법	시행령
<p>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9)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시행령
<p>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p>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당 경영책임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10) 특례

법	시행령
<p>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11) 손해배상책임

법	시행령
<p>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2)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법	시행령
<p>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 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p>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13) 서면보관

법	시행령
	<p>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보관 의무가 제외된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하여야 한다.

14) 시행일

법	시행령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1.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③개인사업주 ⑥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시행한다.

핵심포인트

» 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5) 별표

법	영
	<p>[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p> <p>[별표 2] 생략</p> <p>[별표 3] 생략</p> <p>[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p> <p>[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제8조제3호 관련)</p>

2.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 리더십은 “㉔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 후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공표 ㉕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배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기술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 ㉖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목표 및 방침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린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②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림
 - 주요 업무 관계자에게 밝힘으로써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가 강화되는 효과
- ③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 ④ 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
 -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

(2) 자원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한다.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한다.
-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자원의 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있는 조직체계를 구성·재편
 - 대기업은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
- ②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 ③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

(3) 권한과 책임

(가) 실행전략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한다.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
-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함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
- ④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 ⑤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단,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2) 노동자의 참여

노동자의 참여는 “㉔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공지
㉕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㉖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정보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나) 실행방법

-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②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 ③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림

(2) 안전보건절차

(가) 실행전략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나) 실행방법

- ①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②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③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

- ④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

노동조합 역할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위원의 유급 활동시간 보장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은 별개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안전문화, 신고, 제안

(가) 실행전략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든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②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함
- ③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
- ④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⑤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시, 해당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 시킴
- ⑥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눔

3)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파악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분류·정리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인자, 화재·폭발·누출의 위험,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등을 파악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조사”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유해·위험요인 수집

(가) 실행전략

- 유해·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나) 실행방법

- ①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
- ②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
- ③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가) 실행전략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우수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 ② 사고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

(3) 위험기계·기구·설비

(가) 실행전략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
 -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한다.
- ②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

(4) 유해위험인자 파악

(가) 실행전략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한다.
-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나) 실행방법

- ①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Che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를 확인.
 - 화학물질별 정보는 <https://msds.kosha.or.kr/>에서 확인
 - 국제 화학물질안전카드
https://www.ilo.org/dyn/icsc/showcard.listcards3?p_lang=ko에서 확인
- ②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임
 - 해당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에 위해를 야기
- ③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
- ④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
 -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

(가) 실행전략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②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
 -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예: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비계 (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 ③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함
 - 터파기→ 흙막이 지보공 조립 기초바닥 공사→ 철골 설치→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마감→ 내부 인테리어 (예: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작업 직전)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는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제거→대체→통제→개인보호구)을 검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공유하고 이행 ㉡위험요인 제거·대체 또는 통제방안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위험성평가

(가) 실행전략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 실행방법

- ①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
 - ㉠위험기계 등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작업형태(위험성 추정)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
 - 재해의 규모(재해자 수)와 사망, 중증 부상 및 질병 등 재해의 정도로 판단
 -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위험성평가지침해설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
-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함

(2)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가) 실행전략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 '제거 → 대체 → 통제 →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 순으로 검토
 - 제거·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학적·행정적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

- ②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함께 논의한다.
- ③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3) 종합대책 수립·이행

(가) 실행전략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
- ② 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
- ③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
- ④ 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
- 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
- ⑥ 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

(4) 교육훈련

(가) 실행전략

- 각 작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 제거·대체 또는 통제방안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나) 실행방법

- ①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
- ②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
- ③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 ⑤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
- ⑥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 ⑦ 경영자·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
- ⑧ 경영자·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
- ⑨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
- 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 ⑪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5)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사업장 단위 시나리오’를 작성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 및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및 환류”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비상대응 시나리오

(가) 실행전략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 사업장 단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
- ②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 ③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2)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가) 실행전략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
- ②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③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노동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수급업체 안전보건 지원 및 의사소통”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 실행전략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한다.
-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한다.
- 계약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한다.

(나) 실행방법

- ①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②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음
- ③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
- ④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예: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
 - 사내 상주 협력업체 등이 아닌 공급업체 소속 직원 등의 실수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9.27.)는 불화수소를 납품하던 탱크로리에서 누출되어 피해(종사자 5명 사망, 18명 부상)가 발생
- ②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림
- ③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④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
- ⑤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⑥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의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
- ⑦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7) 평가 및 개선

평가 및 개선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성과, 현장 운영, 사고발생 근본원인을 확인 ㉢문제점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1) 목표설정 및 정기평가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나) 실행방법

- ①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 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③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
- ④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

(2)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확인

(가)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데 집중한다.

(나) 실행방법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 ②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절한지 평가
- ③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하고, ㉠면담 ㉡서류확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 ④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단, 아차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시에는 징계 등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⑤ 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파

(3) 검토 및 개선

(가) 실행전략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나) 실행방법

- ① 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
- ②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2. 전담 안전보건 조직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4.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예산, 성과평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8. 비상대응 매뉴얼
9.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2장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법 제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비상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실시,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경영책임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합이 3명 이상이고 상근 노동자가 500인 이상(건설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이면 안전보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전사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안전보건방침의 수립·공개·개정 ㉡전사 안전보건계획의 작성·공개·변경 ㉢전사 내부감사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관련 매뉴얼·절차서·지침서·규정·수칙의 제·개정 ㉥안전보건 교육·홍보 관련 교재·교안·핸드북·리플릿·포스터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전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예산, 성과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19조 및 제 2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종사자의 의견청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전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비상대응매뉴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㉔작업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㉕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㉖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도급시 안전보건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㉗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㉘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㉙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점검결과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경영책임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경영방침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①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될 것
- ②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할 것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여건에 적합할 것
- ④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할 것
- 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노동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2) 안전보건 목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목표를 수립 시 위험성평가 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구체적일 것
 - ②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
 - ③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 ④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을 것
 - ⑤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목표 추진계획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 ②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수단 · 방법 · 일정 · 예산 · 인원)
- ③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소통 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 이해, 내외부 현안사항 파악 • 4.2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준수 의무사항 파악 • 5.1 리더십 • 5.2 안전보건 방침 • 6.2 안전보건 목표 • 6.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여부 » 담당자, 일정, 예산, 성과지표 포함 » 내용 공유 여부

경영책임자는 공표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 안전보건 조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과의 합이 3명 이상이고 상근 노동자가 500인 이상(건설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이면 안전보건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담조직은 전사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공개, 개정
- ② 전사 안전보건계획의 작성, 공개, 변경
- ③ 전사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관리
- ④ 안전보건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규정, 수칙 제·개정
- 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관리 및 지원
- ⑥ 안전보건 자격, 면허 관리 및 인력양성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회 운영
- ⑧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산재통계관리
- ⑨ 전사 내부감사
- ⑩ 경영자 검토
- ⑪ 안전보건 교육·홍보 관련 교재, 교안, 핸드북, 리플릿, 포스터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

전담조직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는 겸임해서는 아니되며 전사 안전보건 기획, 평가, 환류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안전보건관련 자격보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보유, 안전보건경력 10년 이상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실과 같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담 안전보건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7.1 자원 • 7.2 역량 및 적격성 • 7.3 인식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표, 업무분장 여부



〈그림 1〉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예시(제조업)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1) 위험성평가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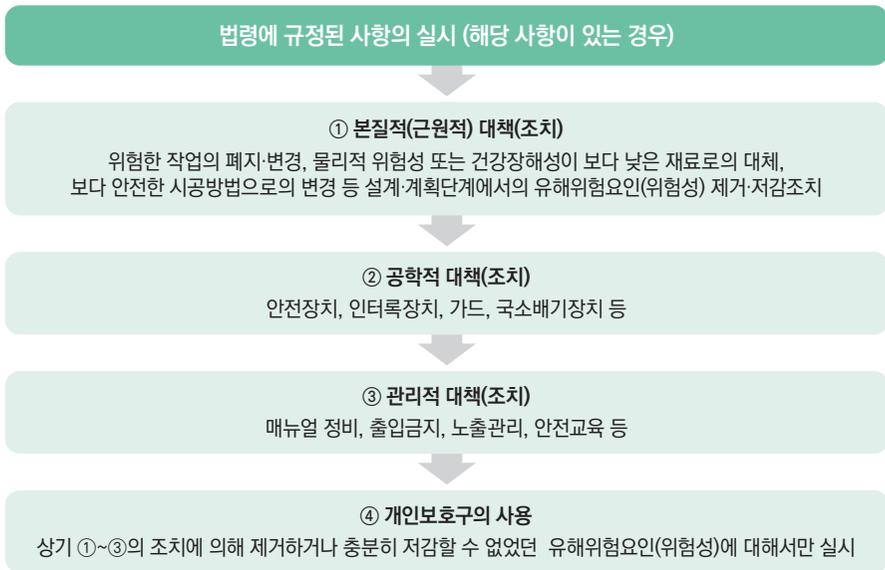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작업방법, 보유·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기계,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공정 등 종사자의 노동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와 그 밖의 종사자의 요구사항 파악을 통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내·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과 기회를 결정하고 평가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특성·규모·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사업 또는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위험성평가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 ②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 ③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위험성평가를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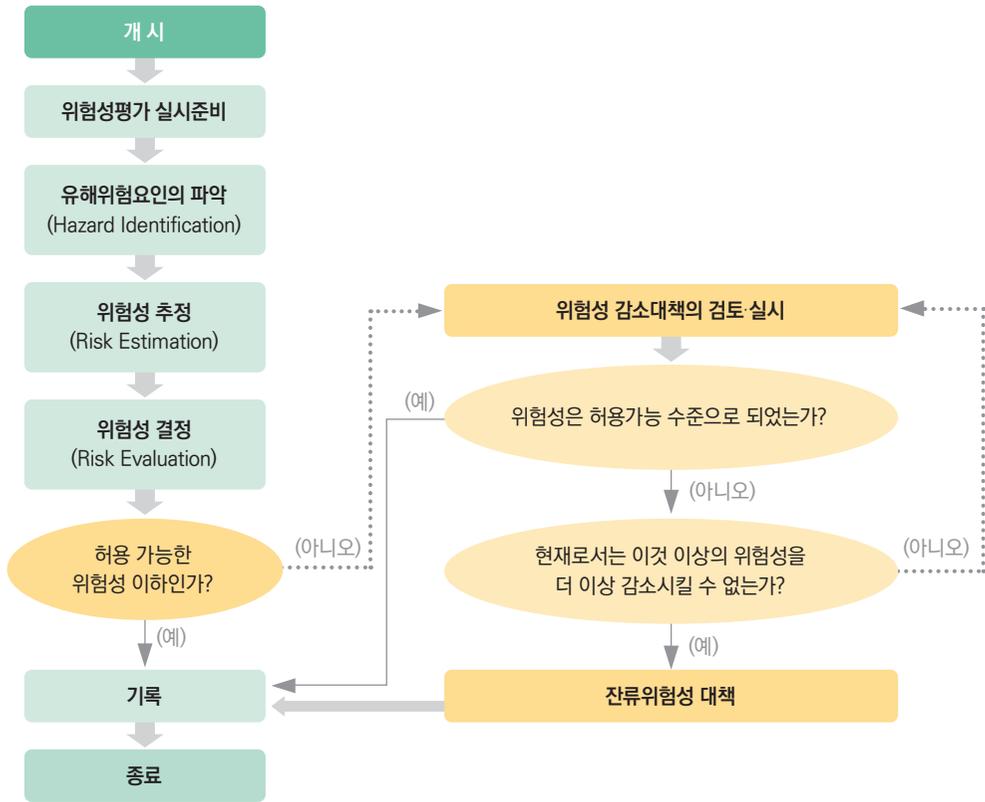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 ②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④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에 대한 경고,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⑤ 개인보호구의 사용
- ⑥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1단계) 위험원을 파악한다.
- 2단계) 위험원에서 생기는 위험의 크기를 추정한다.
- 3단계) 위험성을 결정하고 저감대책을 취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4단계) 위험성을 저감하는 수단을 정하여 실시한다.
- 5단계) 허용 가능한 위험성까지 저감하였는지를 판단한다.



〈그림 2〉 위험성 감소조치 검토의 우선 순위



〈그림3〉 위험성평가 흐름도

2) 안전보건활동 계획 및 이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
|-------------------------|-------------------|
| ① 작업장의 안전조치 | ⑧ 전기재해 예방활동 |
| ② 중량물 · 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 ⑨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
| ③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⑩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
| ④ 위험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⑪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지원 |
| ⑤ 떨어짐 · 무너짐에 대한 방지조치 | ⑫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
| ⑥ 안전검사 실시 | ⑬ 산업재해조사 활동 |
| ⑦ 폭발 ·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 ⑭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후 조치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1 위험성평가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절차서 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공유 여부 »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 사전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시 작업위험성평가 여부 » 대책은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적용 여부

4.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은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할 것
 - ② 구체적인 일 것
 - ③ 성과측정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④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할 것
 - ⑤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을 것
 - ⑥ 일시, 담당자, 소요예산이 명확할 것
- 안전보건예산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① 안전보건예산 편성 대비 집행실적
 - ② 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강도
 - ③ 안전사고 손실비용
 - ④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
 - ⑤ 현업 부서장 자체점검 및 개선실적
 - ⑥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요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 ⑦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현황
 - ⑧ 대관업무에 따른 인허가 여부,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벌금 부과 등
- 경영책임자는 공사·상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의 적정성을 반기별 점검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집행부진으로 인해 시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예산, 성과평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선임요건

상시근로자 50명(또는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역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⑩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가) 선임요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역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작업의 중지
-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의비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⑤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3)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노동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원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예산, 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3) 역량 및 적격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수행상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성과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성과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 후 실행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 여부의 확인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 평가
-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 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 ⑥ 위험성평가에 따른 활동

성과평가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현장에 작업환경 등 측정장비가 필요한 경우 측정장비는 항상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교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조직의 업무 권한, 예산,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7.3 인식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표, 업무분장 여부 » 직무교육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 1회 이상 » 목표 대비 계획 달성 여부 » 준법 평가 여부 » 계측기 검교정 여부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배치

(1) 안전관리자

(가) 선임요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겸직 가능하나 300인 이상 사업장 겸직 불가하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역할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⑨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보건관리자

(가) 선임요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겸직 가능하나 300인 이상 사업장 겸직 불가하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역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②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 직무
- ⑥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⑦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 ⑧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⑨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보건의

(가) 선임요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단,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 가능하다.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역할

- ①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 ② 노동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③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학적 조치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가) 선임요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나) 역할

-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일반·특수·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 겸임시 업무수행 시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안전관리자 • 제18조 보건관리자 •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22조 산업보건의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 월간상태보고서 결재 및 시정조치 여부 » 선임자의 직접 업무수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7.1 자원 • 7.2 역량 및 적격성 • 7.3 인식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표, 업무분장 여부 » 직무교육 여부

2) 겸임 시 업무수행 시간 배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① 최소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경우 702시간)
- ② 상시 노동자수 100~199명의 경우 100시간 추가
- ③ 상시 노동자수 200~299명의 경우 200시간 추가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종사자의 참여 및 협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두도록 한 것이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하는 등 종사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지명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①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성과
- ②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 ③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
- ④ 정기적 성과평가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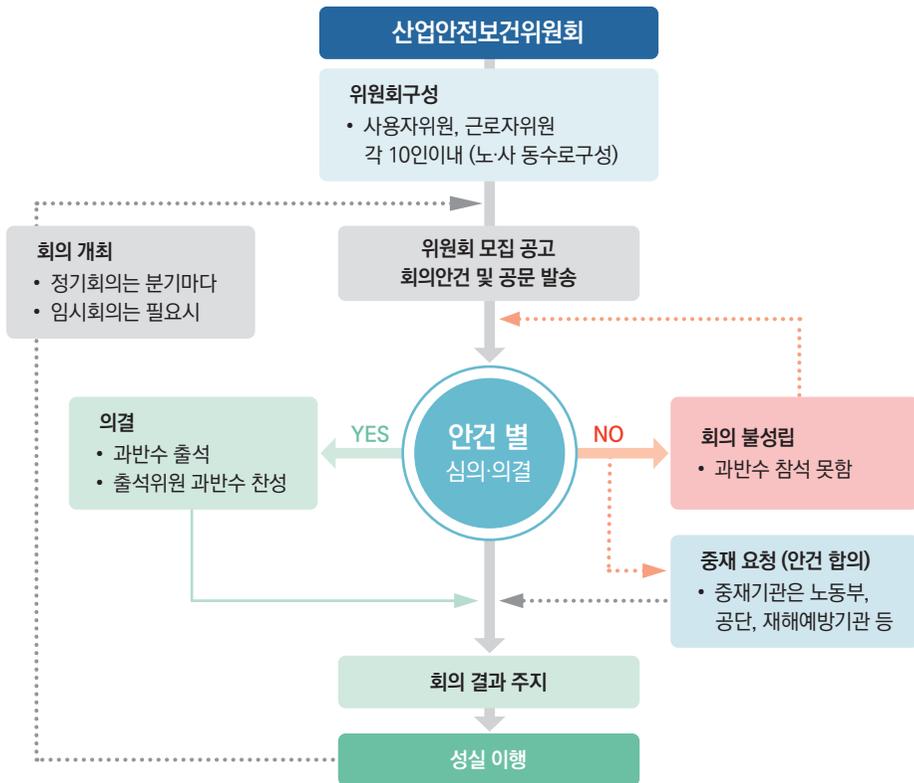
조직의 규모, 노동자의 역량 등의 이유로 문서화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관습·문화에 맞추어 큰 조직에서는 위원회 등에서, 소규모 조직에서는 간담회 등에서 주지를 행하는 등 정보제공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적(분기마다)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흐름도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핵심포인트

- »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현장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기구로 작동한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노사공동의 노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도급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도급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③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④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3)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¹⁾를 말한다.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다. 안전보건 문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경영관련 사항까지 포괄하는 노사 간 협의 및 의결기구이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②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③ 노동자의 고충처리
- ④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 ⑤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⑥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⑦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 ⑧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⑩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⑪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⑫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⑬ 노동자의 복지증진
- ⑭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 설비의 설치
- ⑮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⑯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1)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제1호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의 내용, 대상, 시기, 방법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사소통 시 성별, 언어, 문화, 장애와 같은 다양한 측면²⁾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문제와 활동에 대한 종사자의 참여(견해, 개선 아이디어, 관심사항)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여야 한다.

핵심포인트

-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 반기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64조 안전보건협의체 • 제75조 노사협의체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에 안전보건 주요내용 기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 노동자의 참여 및 협의 •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위험성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지원,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개선조치, 노동자건강 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사고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안전진단 및 개선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등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에 안전보건 주요내용 기록 여부 »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안전 교육, 경고표지 여부

2) 고령자,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사람이 혼재되어 일하는 직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명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전한 행동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위험, 주의 등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를 병기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

8. 비상대응 매뉴얼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
-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정·보완할 것
-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무 및 수행절차
 -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 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및 홍보 방안을 포함할 것
- 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안전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것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반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조 노동자의 작업중지 • 제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조치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서 마련 여부 » 준수평가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이행, 전파교육, 공유 여부 » 사고 시나리오 마련, 훈련 및 인근주민 공유 » 밀폐공간 질식예방 훈련 여부 » 심폐소생 훈련 여부 » 비상장비,설비,도구 리스트 » 비상조직 및 연락 » 1차 집결지, 2차 집결지 » 정량적 위험성 평가(CA)에 따른 보호구/방재함 배치, 비상대피로 마련 » 비상발전기 부하도, 정기 무부하 운전, 기록

9.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㉔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㉕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㉖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조달 및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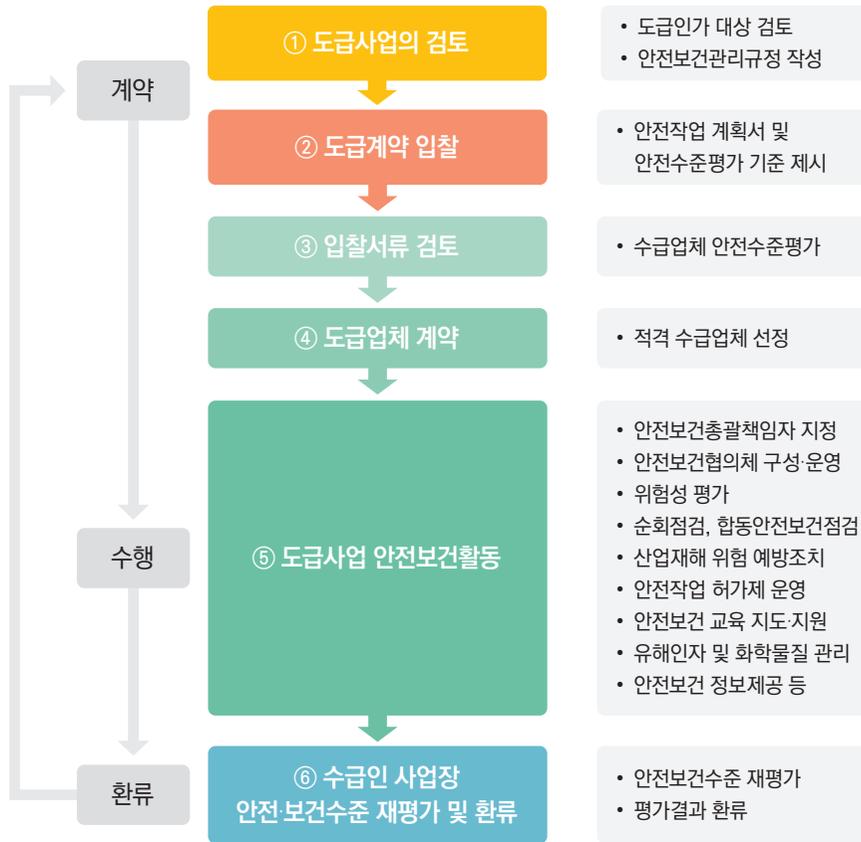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조달 또는 임대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달 또는 임대물품의 안전보건상의 요구사항
- ② 조달 및 임대 물품에 대한 입고 전 안전성 확인
- ③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용설명서 등의 안전보건 정보 공유 사항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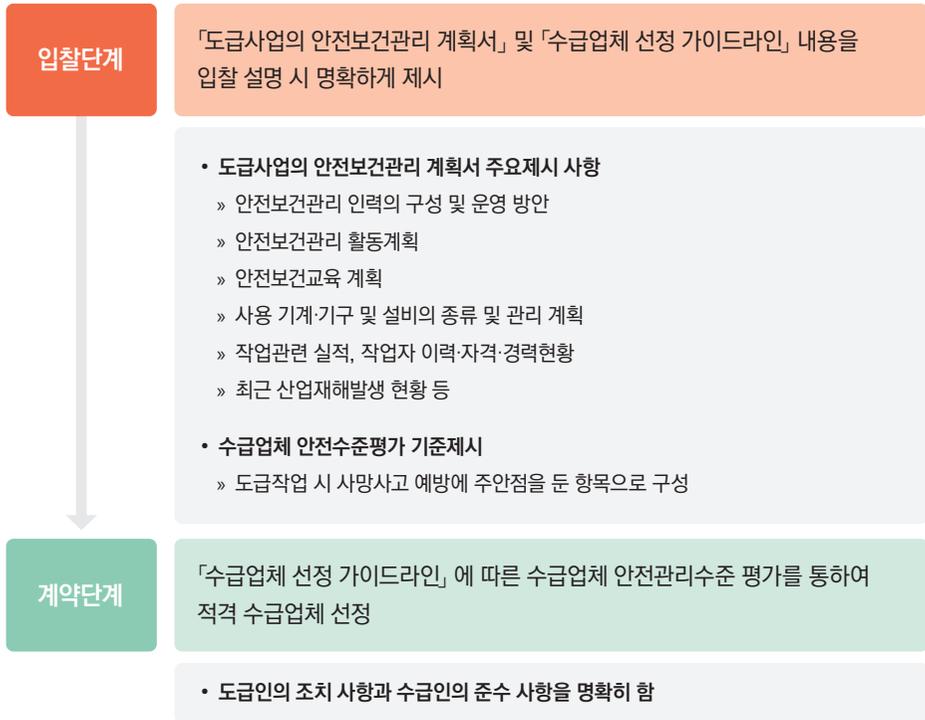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사업 운영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5〉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시 안전보건관련 활동상황을 요구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림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

-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한다.

[표 4]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특점	비고
안전보건 관리체제 (20점)	1. 일반원칙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원청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실행수준 (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운영관리 (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원청/하청 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 수준 (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등급	특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낮음

수급업체의 선정기준은 ㉔일반작업은 C등급 이상 ㉕산업재해 발생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제외한 위험장소는 B등급 이상 ㉖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S등급은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① 안전보건교육 : 교육장소, 교육자료 제공
- ② 위험성평가 :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 ③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 ④ 안전보건점검 : 2개월(또는 분기)마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2일(또는 매주)마다 순회점검 실시
- ⑤ 안전보건정보 제공 : 위험성평가 결과,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표준, 작업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 시나리오, 비상 대피로 및 연락망, 안전작업허가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 등
- ⑥ 공사기간 등 준수 : 위험한 공법 사용,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은 안됨
- ⑦ 작업환경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등 제공
- ⑧ 안전보건조치 이행
- ⑨ 산업재해 현황 제출

(2) 적격 수급업체 모니터링

(가) 안전보건방침 명확화

- ① 최고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②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나)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 ①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표
 -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 목표,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 지정
- ②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과별)로 수립
 - 수단, 방법, 일정, 예산, 인원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다)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책임·권한 설정

- ①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 (역할·책임·권한 등) 명확화
- ②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라)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 ①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여부 및 활동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 ② 안전보건관련 법규,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③ 모니터링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파악과 시정조치 절차 시행

(마)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①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②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③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유지
- ④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 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바)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 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②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전 현장 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사)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① 도급작업전 위험성평가
 - 모든 노동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 정비 등 비일상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도급작업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③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 법정검사 수검 및 방호조치 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 ④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폭발·질식·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 ⑤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작업재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를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하고 완료확인결과에 따른 작업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대리인의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 ⑥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결정
 - 수리, 정비 작업시 Lock-out/Tag-out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채널 운영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 조정
- ⑦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평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⑧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도급작업장의 원하청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어 보호구 구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서 마련 및 발행 여부 » 화기감시자 배치 여부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점검결과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및 결과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은 법령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법령 요구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안전보건기준과 지침
 -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상의 기술적인 지침
- 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법령 요구사항은 최신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법령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반기 점검,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반기 점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제29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 평가 여부 » 연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정기 안전교육 내용 이해 » 교육 수요조사 여부 » 교육 성과평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7.3 인식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전 안전교육 여부 » 최신 법령 검토, 내용 공유 » 준법 평가 여부

2) 안전보건점검 미이행 시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집행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교육 점검 및 결과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4)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시 예산의 확보 및 교육 실시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이행을 점검하여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영책임자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일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는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설계하여야 한다.
-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노동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노동자 외의 노동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외의 노동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노동자		1시간 이상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노동자		1시간 이상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8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노동자	4시간 이상

1)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1)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또는 매년 1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
- ②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
-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
-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
-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

(2) 정기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사무직 종사 노동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외의 노동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외의 노동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②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 노동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시 교육

-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신규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8시간 이상
- ②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노동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2시간 이상

(5) 특별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노동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일용노동자 : 2시간 이상
 -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16시간 이상
- ②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
-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일부를 면제 가능

(6) 물질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자에게 교육 실시
 -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는 경우
 -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7) 직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 필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② 해당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 ①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여부를 점검 실시
- ②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를 확인
- ③ 수급업체의 법정교육 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추가교육의 시행여부를 확인



제3장

사업장 대응방안

1. 안전보건절차서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규정
3. 위험성평가 절차
4. 안전예산 운영규정

제3장 사업장 대응방안

1. 안전보건절차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 제2호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3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해도 인정된다.
- 제4호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5호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6호에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7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8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9호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규정)** 전담조직의 ㉔안전보건방침의 수립, 공개, 개정 ㉕전사 안전보건계획의 작성, 공개, 변경 ㉖전사 내부감사 ㉗경영자 검토 ㉘안전보건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규정, 수칙 제·개정 ㉙안전보건교육·홍보 관련 교재, 교안, 핸드북, 리플릿, 포스터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노동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에 대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를 누락없이 실시한다.
- **(안전예산 운영규정)** 안전보건경영방침, 경영검토 결과,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결과,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종사자 및 사업장 방문 고객의 요구사항 등과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조직의 내·외부 의사소통이 필요한 각 분야의 문제점, 건의사항, 불만사항, 안전보건사고 사례 및 비상상황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접수 또는 분석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한다.
- **(비상대응 매뉴얼)**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급박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도급 안전보건관리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임·직원과 도급사업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㉔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㉕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㉖작업장의 순회점검 ㉗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㉘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㉙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㉚위험성평가 ㉛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㉜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 규정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역의 합이 3명 이상이고 상시 노동자가 500인 이상(건설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이면 안전보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 ② 전사 안전보건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계획 및 업무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역할 및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
- ③ 전담조직이 전사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④ 전담조직은 전사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공개, 개정
 - ㉡전사 안전보건계획의 작성, 공개, 변경
 - ㉢전사 내부감사
 - ㉣경영자 검토
 - ㉤안전보건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규정, 수칙 제·개정
 - ㉥안전보건교육·홍보 관련 교재, 교안, 핸드북, 리플릿, 포스터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
- ⑤ 전담조직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는 겸임해서는 아니되며 전사 안전보건 기획, 평가, 환류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안전보건관련 자격보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보유, 안전보건경력 10년 이상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실과 같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 ⑥ 전담조직에서 발행한 전사 안전보건관련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수칙, 규정, 리플릿, 포스터 및 기획, 평가, 환류 관련 기록물은 위임전결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

3. 위험성평가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①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 ②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③ 위험성평가 교육
- ④ 위험성평가 회의
- ⑤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선정
- ⑥ 안전보건정보 수집

2) 노동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① 결정된 평가대상 공정 또는 작업에 내재하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파악
- ② 유해·위험요인을 유해·위험요인 분류표를 통해 확인
- ③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는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사방법을 사용하며,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조사는 필수적으로 실시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회사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 ② 위험성 추정은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사고의 발생 가능성} \times \text{사고결과의 중대성}$$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① 위험성 결정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② 최근 1년 내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성을 높게 반영
- ③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단계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①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위험성 8등급 이상)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및 “㉠위험성 제거·저감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
- ③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 ④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공지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서 ㉢위험성평가 사전 조사 안전보건정보(순회점검, 청취조사 등) ㉡유해·위험요인 조사 결과 ㉣위험성 결정의 내용(위험성) ㉣위험성 결정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위험성평가 교육결과서(실시 전·후)”가 포함
-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문서규정 등에 준하여 보존하되 3년간 보존

4. 안전예산 운영규정

- ①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 경영검토 결과,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결과,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종사자 및 사업장 방문 고객의 요구사항 등과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을 수립
- ② 현업 부서장은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주관 부서로 통보
- ③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매년 상반기 전 부서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안전보건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도급 안전보건협의체(필요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게시판, 이메일, 공문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공지
- ④ 안전보건예산 집행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내부심사를 통하여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점검

1)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 ①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각 분야의 문제점, 건의사항, 불만사항, 안전보건 사고 사례 및 비상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 그룹웨어 전자문서를 통하여 송부
- ②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내부 의사소통이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접수 또는 분석한 경우 이들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필요 여부를 결정
- ③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안전보건정보에 대하여 정보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 대상자에게 전달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

2) 비상대응 매뉴얼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과정을 따를 것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 할 것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후의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은 즉시 시정

3) 도급 안전보건관리 절차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급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임·직원과 도급사업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운영할 것
- ②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 시킬 것
- ③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작업장의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 ㉦위험성평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과 같은 조치 실시

제4장

노동자의 참여 및 알 권리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4. 안전점검 참여
 5.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6.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8. 노동자의 알 권리

제4장 노동자의 참여 및 알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참여 및 알 권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등 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이다.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주지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주지
-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 ⑤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 통지
- 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⑦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⑧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⑨ 유해위험시설 및 장소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 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및 교육
- ⑪ 출입금지 표지 게시
- ⑫ 유해물질 명칭 등의 게시
- ⑬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 ⑭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제26조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제27조에 따라서 노동자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시 주요 내용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1)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노동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노동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내용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의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사항

위험성평가는 매년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를 누락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또한, 매년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공생하는 수급업체가 직면한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하게 조치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⑤ 산업재해 발생
-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위험성평가 보존

위험성평가 및 개선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②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③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④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⑥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⑦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5) 노동조합의 역할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개선결과를 파악(적정 여부 포함)하고 대상 노동자가 유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은 회의내용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내용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의 공식적인 안전보건 의사소통 창구이므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노사의 대응조치 및 관련 사항 일체를 심의·의결하여 명문화³⁾한다. 단체협약으로 이를 보강하여, 제대로 효력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구조·구난 실시,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사고 발생 시 동종유사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및 노사합동안전점검, 작업재개 요건에 대한 합의(사고원인 파악 및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등), 조합원 간담회

-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
- ② 안전검사 ·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 · 역학조사 · 안전보건진단등 근로자대표 입회
- ③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결과 설명 청취⁴⁾
- ④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⑥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노동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심의 · 의결
- ⑦ 사업장 감독시 근로자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 ⑧ 산업재해조사표 근로자대표 확인

(2) 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고 발생이 접수되면 최소 6시간 이내⁵⁾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조합원 간담회, 재발방지 대책을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사고발생 공정의 노동과정, 일상적인 노동관행, 목격자 진술, 해당 공정 작업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입장을 마련한 뒤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임하지 않으면, 회사의 논리에 말려들기 쉽기 때문이다.

4. 안전점검 참여

1) 안전점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주요 내용

안전점검 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결과를 5년간 보존하고, 점검내용은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후속 개선조치가 이뤄지는 지를 확인(수급업체 유해 · 위험요인 포함)하여야 한다.

4) 입회 및 설명청취 권리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거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5)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앞서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

- ①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 ②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③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④ 노동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⑤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 ⑥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 ⑦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⑧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 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3) 노동조합의 역할

가능한 매월 안전점검 또는 경영책임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도급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는 참석한다.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의 안전보건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안전보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점검결과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노동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노동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1) 작업중지

작업중지는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노동자를 위협하는 상황일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2)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또는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자가 작업중지 현장에 재투입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의 해소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의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전파와 동시에 노동조합이 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는, 사고원인 조사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고공정 작업중지'이다.

급박한 위험이란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와 짐줄은 지급받았으나 걸이대가 없는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치하였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직결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6.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1) 사고현장 보존의 중요성 및 개요

사고조사에서 사고현장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데,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직·간접적 원인, 고용구조와 고용형태, 일상적인 안전보건 조치 수준, 실제 노동과정 및 노동 관행 등)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고원인에 따라 사고방지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공정은 반드시 원인파악 및 현장개선 계획이 마무리되기 이전까지는 작업이 중지되고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법 규정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 놓아야 사업주가 임의대로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한 중대산업재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 작업중지 범위나 기간이 최소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으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말을 반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사측은 현장의 조합원들을 흔들거나 압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축소·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족을 압박하거나 회유를 하면서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도 한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책위 구성과 조합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해당 사건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대책위는 사고조사를 비롯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활동, 유족에 대한 지원, 법률적 지원, 언론 대응을 통해서 해당 사고가 온전히 해결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역할

(1)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자 응급조치, 사고 전파, 병원 후송, 사고확대 방지, 2차 사고방지, 현장보존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2) 사고조사위원회 및 작업중지 과정 참여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관 하에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한다.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고원인이 제거되고 현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식과 절차에 대해 사전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3) 재해자 보상 및 산재예방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또는 그 유족)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고 발생 시 조합원이 연락해야 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⁶⁾. 또한, 재해자의 산재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중대재해 사고 목격자와 동료들의 트라우마 치료 및 지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가 특별휴가를 권고하게 해야 한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외에도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대응훈련을 사측과 함께 실시한다.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재해에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해 발생 이후 회사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하면, 회사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사고를 은폐·축소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발 빠른 합의를 위해 연락처 공유를 거부하기도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전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로 즉각적인 유선 통화 (044- 202 -8959)나 공문 등을 통해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구하고, 출동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긴급하게 유선상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외에도 119(안전신고센터) 및 112(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림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후속조치 프로세스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⑤ 작업환경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⑥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⑦ 노동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⑧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⑨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의 업무

3)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 노동자의 알 권리

- ①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주지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주지
-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 ⑤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결과 통지
- ⑥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급성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
- ⑦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 전파 및 감염 경로
 -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 ⑧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게 유해성 등의 주지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⑨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 ※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노동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함

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및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내에 “㉔제품명 ㉕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㉖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㉗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㉘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종사자를 안전교육하여야 함

⑪ 출입금지 표지 게시

-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작업발판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구역에는 관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 밀폐공간에는 관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

⑫ 유해물질 명칭 등의 게시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㉔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㉕인체에 미치는 영향 ㉖취급상 주의사항 ㉗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㉘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㉔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㉕인체에 미치는 영향 ㉖취급상의 주의사항 ㉗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㉘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

⑬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 사항 통지 요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도급인의 이행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2. 중대재해처벌법 준법 점검표
3. 산업안전보건법 준법 점검표
4. 계층별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
5.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연간계획
6.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7.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8. 고용노동부 활용서식 모음

1. 중대재해처벌법(법·시행령)

법	시행령
<p>[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p>[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물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법	시행령
<p>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p>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p>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p>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p> <p>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p>

법	시행령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p>제3조(적용범위)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p>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관리하는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p>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 <p>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정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법	시행령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p>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법	시행령
	<p>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9.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p>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법	시행령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p>

법	시행령
<p>제3장 중대시민재해</p> <p>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p>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3장 중대시민재해</p> <p>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법	시행령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p> <p>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p>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p> <p>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p> <p>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p> <p>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제9조(원료·제조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법	시행령
	<p>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법	시행령
	<p>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p> <p>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p>

법	시행령
	<p>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p> <p>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p> <p>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	시행령
<p>제4장 보칙</p> <p>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p> <p>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p>제4장 보칙</p> <p>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p> <p>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해당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p> <p>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p>

법	시행령
<p>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p> <p>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p> <p>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p>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p>	<p>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p> <p>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천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노동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염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시행령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2. 중대재해처벌법 준법 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준법점검결과표

사업장 (부서)		점검일		점검자	
-------------	--	-----	--	-----	--

* 완료일은 윗줄 예정일과 아랫줄 조치일로 작성

법 조항	법요건	준법수준					개선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문제점/개선대책	완료일	담당자	
		5	4	3	2	1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4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4	중앙정부, 지자체의 개선,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5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4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4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조직 편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산업보건의								
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4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 반기 점검								
4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 인력, 시설, 장비 위험성평가결과 개선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권한과 예산								

법 조항	법요건	준법수준					개선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문제점/개선대책	완료일	담당자	
		5	4	3	2	1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성과평가 절차 수립, 반기 점검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4	종사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 반기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4	중대산업재해, 작업중지시 대응매뉴얼 마련, 반기 점검									
4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절차 마련, 반기 점검 안전수준평가, 안전관리비, 공사기간									
5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반기 점검, 조치 인력, 예산 관계 법령 리스트 및 업데이트									
5	법정교육 실시 반기 점검, 조치 교육, 예산									

3. 산업안전보건법 준법 점검표

산업안전보건법 준법점검결과표

사업장 (부서)		점검일		점검자	
-------------	--	-----	--	-----	--

* 완료일은 윗줄 예정일과 아랫줄 조치일로 작성

법 조항	법요건	준법수준					개선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문제점/개선대책	완료일	담당자	
		5	4	3	2	1				
14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적정성									
16	관리감독자 선임									
16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적정성									
17	안전관리자 선임									
17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적정성									
18	보건관리자 선임									
18	보건관리자 직무 수행 적정성									
19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19	안전보건담당자 직무 수행 적정성									
22	산업보건의 선임									
22	산업보건의 직무 수행 적정성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시행 도급인 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26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내용 적정성									
27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적정성									
29	노동자 안전교육									

법 조항	법요건	준법수준					개선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문제점/개선대책	완료일	담당자	
		5	4	3	2	1				
30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3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32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32	안전보건담당자 직무교육									
34	법령요지의 게시									
36	위험성평가 실시									
37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38	기계기구 설비의 위험									
38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의 위험									
38	전기, 열, 에너지의 위험									
39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39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39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에 의한 건강장해									
39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9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에 의한 건강장해									
40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41	고객 폭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52	노동자의 작업중지									
57	산재 발생 보고									
58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59	도급의 승인									
60	하도급 금지									
61	적격 수급업체 선정									
6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6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조항	법요건	준법수준					개선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문제점/개선대책	완료일	담당자	
		5	4	3	2	1				
64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교육 지원									
	교육실시 확인									
	위생시설 지원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65	도급인의 안전보건정보 제공								
80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87	안전인증 대상기계 사용									
91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사용									
95	안전검사 대상기계 사용									
107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11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11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의 경고표시									
125	작업환경측정									
129	일반건강진단									
130	특수건강진단									
132	유소견자, 요관찰자 사후관리									
138	질병자의 근로 금지, 제한									
140	자격에 의한 취업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일러안전관리자									
	지게차 운전면허									
	방사선 취급면허 등									

4. 계층별 안전보건 역할 및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안전보건관리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관리업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노동자 건강관리 등 ○ 지도·감독업무 :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산재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에 관한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등 	<p>1.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략적 방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문화의 개발, 실행 및 촉진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상에 종사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관리감독자</p> <p>가.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p> <p>나.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노동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p> <p>다.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p> <p>라.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p> <p>마. 사업장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2)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 <p>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업무</p> <p>사.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중간관리자가 알아야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절차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의 담당자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해당공정의 위험성 평가방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해당공정의 중요한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유해위험작업공정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장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비상조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최신 기술자료의 보관장소와 관리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안전관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84조 제1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89조 제1항)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3. 현장관리자가 알아야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재해내용과 안전보건목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의 담당자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공정안전자료의 활용과 비치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해당공정의 잠재위험성과 대응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예정되지 아니한 정전시의 조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 기술자료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상조치계획에서 담당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주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 ○ 현장에서의 유해위험물질 취급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가동전 안전점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보건관리자</p> <p>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p> <p>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마.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의 직무</p> <p>바.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사.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p> <p>아.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자.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p> <p>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p> <p>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파.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p> <p>하.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p>	<p>4. 현장 종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보건수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기준과 착용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산업보건의</p> <p>가.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p> <p>나. 노동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 적 조치</p> <p>다.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의학 적 조치</p>	<p>5.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조정자가 알아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과 성과 및 기대효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목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내부심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방법 및 조치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p>안전보건관리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재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법 제129조)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p>6. 협력업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때 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 개인보호구 지급기준과 착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안전작업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원청사(발주자 포함)의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p>안전보건총괄책임자</p> <p>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p> <p>나.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p> <p>다.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p> <p>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관계수급인 간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p> <p>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p>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p>명예산업안전감독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노동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p>안전보건조정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5.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연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 안전보건기본 계획 이사회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요지 게시 • 안전보건교육 • 정기 위험성평가 • 안전기원제 • 안전보건 신년사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도급업체 안전 정보 제공 • 해빙기 점검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 비상훈련 • 작업환경측정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MSDS 안전교육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 특수건강검진 • 건강검진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 법정 안전검사 • 아차사고 발표 대회 • 밀폐공간 안전 교육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 직무스트레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요지 게시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장마철 점검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수급업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체계관련 기준, 규정, 절차, 매뉴얼 수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기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안전보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법평가 위험성평가 점검 • 직책자 성과평가 • 종사자 의견 점검 • 비상매뉴얼 점검 • 예산집행 점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 노사협의회 개최 •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 안전보건방침 검토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 수시 위험성평가 • 심폐소생/응급 조치 교육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 건강검진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 직무교육 • 비상훈련 • 작업환경측정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 법정 안전검사 • 제안제도 발표 대회 • 동절기 점검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합동 안전 보건점검 • 안전보건교육 • 무재해운동 시상 • 매월4일 안전 점검의 날 • 건강검진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체계관련 기준, 규정, 절차, 매뉴얼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기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 체계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법평가 • 경영자검토 • 위험성평가 점검 • 직책자 성과평가 • 종사자 의견 점검 • 비상매뉴얼 점검 • 예산집행 점검

6.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v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14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 이해, 내외부 현안사항 파악 4.2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준수의무사항 파악 5.1 리더십 5.2 안전보건 방침 6.2 안전보건 목표 6.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key point » 안전보건방침 게시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여부 » 담당자, 일정, 예산, 성과 지표 포함 » 내용 공유 여부	• 영 제13조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안전보건 경영방침 • 조직 구성, 인원, 역할 • 안전 예산, 시설 현황 • 전년도 실적 및 다음연도 계획 ☞ 행정서류 • 안전보건경영 방침 공문 • 대표이사의 이사회보고 안건 및 결과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시달 공문 • 각 사업장의 게시 현황 증빙 • 경영목표 평가결과 보고서 • 홍보 실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담 안전보건 조직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7.3 인식 key point » 조직표, 업무분장 여부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 행정서류 •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현황표 • 업무분장표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 변경 제27조 준수		
안전조직의 업무 권한, 예산,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관리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영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영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 1회 이상 » 목표 대비 계획 달성 여부 » 준법 평가 여부 » 계측기 검교정 여부 	<p>☞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배치·권한·책임 관련 내규 •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절차 문서 • 업무수행 평가결과(반기)
<p>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겸임시 업무수행 시간 보장</p>	<p>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2조 산업보건의</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시 월간상태보고서 제출 및 시정조치 여부 » 선임자의 직접 업무수행 여부 	<p>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7.3 인식</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표, 업무분장 여부 » 직무교육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별표 3, 4, 5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 영 제16조 상시근로자 300인 또는 공사금액 130억원 이상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영 제20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 영 제24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영 제29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산업보건의 선임 <p>☞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현황표 • 업무분장표
<p>유해위험개선 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후 조치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실시</p>	<p>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p>	<p>6.1.1 위험성평가</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절차서 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여부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공유 여부 »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 사전 위험성평가 » 안전작업허가시 작업위험성평가 여부 » 대책은 제거,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으로 적용 여부 	<p>고시⁷⁾ 제6조 노동자 참여 고시 제5조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고시 제8조 위험성평가 절차 고시 제15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p> <p>☞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계획서(연도별) • 이행상태 점검결과보고서(반기) • 점검결과 조치 관련 문서

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제37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제40조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제41조 고액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제43조 이행 확인 제 4 4 조 공 정 안전 보 고 서 작성, 제출 제46조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의 안전조치 •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떨어짐·무너짐에 대한 방지 조치 • 안전검사 실시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 전기재해 예방활동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활동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지원 • 안전보건관계자 역할과 활동 • 산업재해조사 활동 •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 <p style="color: #008000; margin-top: 10px;">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 절차서 마련 및 이행 여부 » 변경관리 절차서 마련 및 이행 여부 » 수급업체관리 절차서 마련 및 지원 여부 	
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예산 편성 기준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련 예산 • 집행(결산)결과 보고서 </div>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p>중사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 반기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p>	<p>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64조 안전보건협의체 제75조 노사협의체</p> <p>key point</p> <p>» 회의록에 안전보건 주요내용 기록 여부</p>	<p>5.4 노동자의 참여 및 협의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p> <p>key point</p> <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위험성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지원,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개선조치, 노동자건강 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사고조사결과 및 개선조치, 안전진단 및 개선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등</p> <p>»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에 안전보건 주요내용 기록 여부</p> <p>»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안전 교육, 경고표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별표 9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 영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hr/> <p>ES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회의록 • 개선의견 수렴결과 조치 점검(반기)
<p>중대산업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반기 점검</p>	<p>제52조 노동자의 작업중지 제54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조치</p> <p>key point</p> <p>» 절차서 마련 여부</p> <p>» 준수평가 실시 여부</p>	<p>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p> <p>key point</p> <p>»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이행, 전파교육, 공유 여부</p> <p>» 사고 시나리오 마련, 훈련 및 인근주민 공유</p> <p>» 밀폐공간 질식예방 훈련 여부</p> <p>» 심폐소생 훈련 여부</p> <p>» 비상장비,설비,도구 리스트</p> <p>» 비상조직 및 연락</p> <p>» 1차 집결지, 2차 집결지</p> <p>» CA에 따른 보호구/방재함 배치, 비상대피로 마련</p> <p>» 비상발전기 부하도, 정기 무부하 운전, 기록</p>	<p>ES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의 비상대응매뉴얼 •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 교육훈련실적 점검(반기)
	<p>제59조 도급 승인 제60조 하도급 금지</p>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p>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기준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p>	<p>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p> <p>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연장 제71조 설계변경 요청 제72조 안전보건관리비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재예방 지도 제74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제75조 안전보건협의체의 특례 제76조 건설기계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서 절차서 마련 및 발행 여부 » 화기감시자 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 능력과 기술평가 절차, 안전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 • 안전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안전교육실시 확인, 위생시설 이용 협조, 안전보건조치 확인, 안전보건 정기/수시 점검 • 고시 제5조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hr/> <p>☞ 행정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시 수급업체평가 기준 • 평가결과 보고서 점검 (반기) • 부적격시 조치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고
<p>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 무이행 반기 점검,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반기 점검, 조치</p>	<p>제34조 법령요지 게시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제32조 직무교육</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 평가 여부 » 연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정기 안전교육 내용 이해 » 교육 수요조사 여부 » 교육 성과평가 여부 	<p>6.1.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 검토 7.3 인식</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전 안전교육 여부 » 최신 법령 검토, 내용 공유 » 준법 평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점검 • 위탁 점검
	<p>제87조 안전인증 제91조 자율안전확인 제95조 안전검사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제115조 경고표시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 의무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노동자 의무</p> <p>key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 합격증 부착 여부 » 작업환경측정결과 산보위 보고 및 결재, 시정 여부 » 건강진단 사후조치 여부 		

7.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7-1.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부터 안전보건관련 예산의 확보, 안전보건활동,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업종과 실정에 맞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의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점검의 예를 들은 것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안전작업허가서

- 사내에서 안전작업허가제도의 운영하는 목적은 시운전 또는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 유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⁸⁾에 대해서 작업실시 전에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제거 또는 차단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일반적으로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을 포함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대해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승인하는 등의 세분화된 과정(Detailed process)을 거침으로써 작업 전에 유해위험성이 제거 또는 차단되도록 한다.
- 안전작업허가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작업허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가)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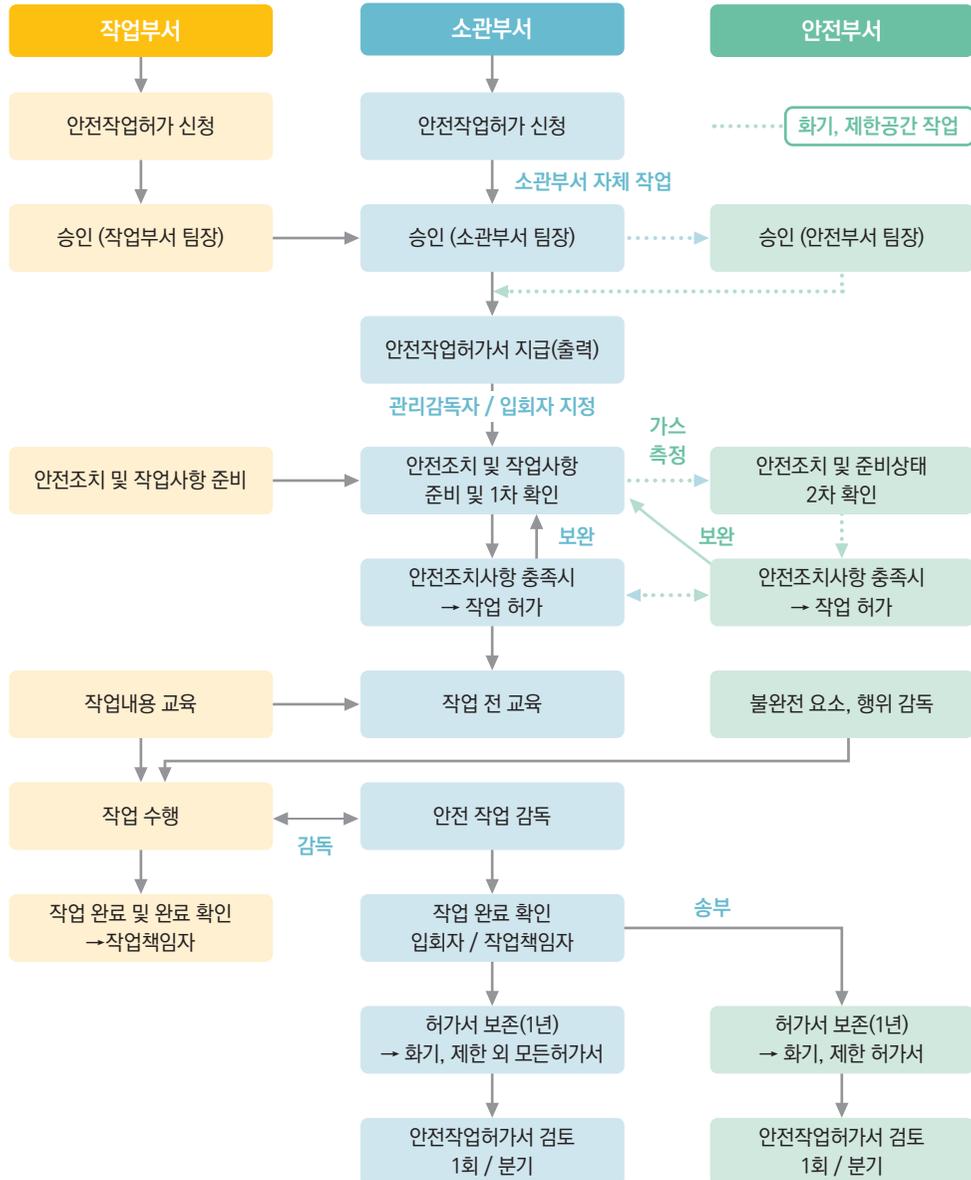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다) 보충적인 작업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보충적인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안전작업허가 절차



<그림 8> 안전작업허가 절차

(가) 발급

허가서 발급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 할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발급자는 보충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작업이 근무 교대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나) 확인·점검

보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내용, 절차, 안전조건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승인(허가)

허가서 승인자는 작업담당자 또는 운전부서 담당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조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허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 조직에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현장게시

허가된 작업허가서는 사본이나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 입회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3) 허가서의 보존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였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된 가스농도 등 모든 작성내용을 입력한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발행연도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2) TBM(Tool Box Meeting) 활동

인간은 지시를 “㉠어기는 버릇 ㉡생략하는 버릇 ㉢잊어버리는 버릇 ㉣절차를 무시하는 버릇” 등 인간은 약점이 있어 일정시간 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망각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안전의 반복은 개인 지적확인이며 개인지적이 잊어버림(망각)을 없애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TBM은 문자 그대로 현장의 도구함 근처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을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로 작업장의 소단위 그룹을 중심으로 단시간에 작업의 범위, 방법, 안전포인트 등을 상의한다.

현장에서 작업시작 전, 현장감독자를 중심으로 약 5~10분 정도 소단위(5~7명)로 진행하는 단시간 회의로, 정비·유지·보수 등의 비정상작업 시에도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건설현장, 정비수리현장, 조선업체, 제철제강업체, 석유화학업체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사업장)에서는 작업자의 복장,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상태, 음주여부 등의 확인(점검)과 작업표준(SOP), 작업시 주의사항, 작업지시,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간단한 안전교육 등을 TBM 절차 일부에 포함하기도 한다.

(1) TBM 시 유의사항

재해예방에 관한 문제를 모두가 협의하고 각자가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TBM의 진행방식, 운영방안 등 유의사항을 주지시켜 두는 것이 중요하다.

TBM의 효과적인 운영은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매뉴얼)화’를 할 필요하다.

특히, 경영자 측의 ‘이해와 지원’, 그리고 실천하는 측의 ‘TBM 운영요령의 학습’은 TBM의 운영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활동을 통해 현장 조직단위에서 재해예방 문제를 협의·실천해 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보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2) TBM 실시방법

Step 1 : 먼저 생각

- 오늘 작업시작 전에 생각하라! 작업장소 주변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해야할 작업은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안전한가?
- 안전작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 소리로 외쳐라! “안전모 착용 좋아!”와 같이 뒷 부분에 “좋아”를 꼭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고 편하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안전모 착용하자!”

Step 2 : 작업상황에 맞게 실시

- 수직부재 용접 시 전도방지 지그를 설치하자! 크레인 해체시 전도방지 조치를 확인하자! 취부(가용접) 용접 시 작업표준을 준수하자!
- 탱크 내 용접 시 조명상태 확인 후 출입하자! 산소농도 측정 후 출입하자! 환기팬 가동 후 작업하자! 이면부 작업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자! 기타 유해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하자!

(3) TBM활동 추진사례

<C기업> 지적확인 사례

- 공구통을 가지고 사다리로 6m를 올라가야 하는 상황
- 생각하자!! : 공구통을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다 추락할 수 있다. 공구통은 “줄”을 이용하여 올리는 게 안전하다.
- 큰소리로 외쳐자!! : 줄을 이용해 공구통을 옮기자!! 사다리 승하강 시 항상 3점 지지(손과 발) 상태를 유지하자!!

<F기업> TBM 활동사례 공유의 장

- 협력사와 함께 ‘TBM 활동사례 공유’ 행사를 개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강화

<G기업> 3 OK 운동

- 작업 전, 작업자 자신, 옆 동료, 전체 동료의 보호구 착용 및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나 OK, 너 OK, 우리 OK”라는 구호를 외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동료애가 넘치는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

<H기업> 3 “~말자” 운동(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해야 할 주요 행동)

- 하지 말자(현장 내 보호구를 벗지 말자, 안전시설물 훼손하지 말자)
- 가지 말자(안전시설 미조치 구역,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현장에 가지 말자)
- 먹지 말자(유해가스 및 먼지 등을 먹지 말자)

3) 아차사고·안전보건제안 활동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및 의식 개선을 위하여 아차사고 발굴과 안전보건 제안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 사업장에 알려 아차사고·안전보건 제안 활성화 및 수상자 포상을 통해 격려 및 동기부여 하고 있다.

‘아차사고 발굴활동’이란, 업무수행 중에 재해가 날 뻔했던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재해로는 연결되지 않은 사건인 ‘아차사고’를 재해예방에 활용하는 활동이다.

대형사고는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하인리히 법칙이며, 이 법칙에서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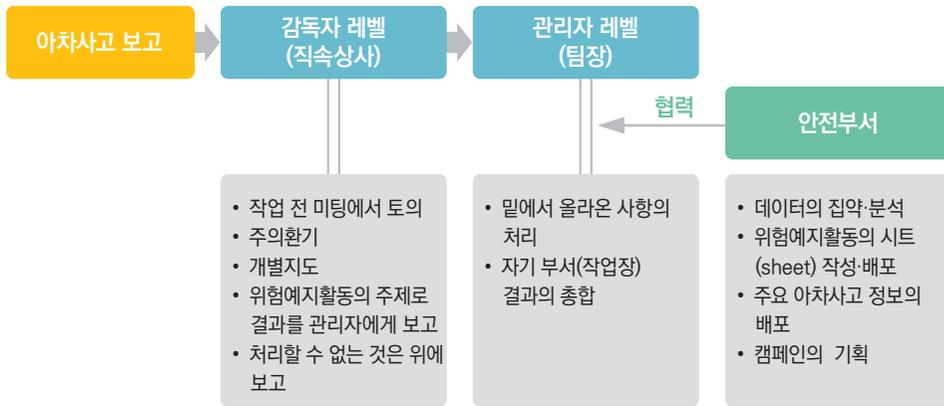
‘안전제안활동’이란, 임직원으로부터 작업상의 위험(사업장의 기계·설비, 작업방법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견,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활동으로,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포상제도의 운영과 맞물려 작업장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안전에 대해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품질·생산·예산절감·안전 등을 종합하며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안전제안활동의 성공 여부는 사업장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위험(유해위험요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위험을 알아차리면 개선제안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의, 위험의 감수성, 체험, 재해사례의 지식, 안전보건 교육의 정도 등에 따라, ‘위험을 감지한 후 개선제안을 하는 것’은 동기부여에 따라 각각 크게 좌우된다.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채택된 것,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분류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분류기준(항목)으로서 인적, 기계적, 작업방법·환경적, 관리적 대책의 4M 방식 등을 활용하면, 향후에 종합적인 대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아차사고 발굴활동 진행단계

- 제1단계) 아차사고 정보의 파악(브레인스토밍 기법 활용, 가급적 많은 정보를 파악)
- 제2단계) 문제점의 분석(수집된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
- 제3단계) 대책의 방침의 결정(기존의 대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수립)
- 제4단계) 실시계획의 수립(결정된 대책의 실시 절차 등 수립)
- 제5단계) 계획의 실시(대책을 실시)
- 제6단계) 실시결과 확인 및 평가(대책이 계획대로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사업장의 일상적 안전보건활동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해당 작업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차사고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그림9〉 아차사고 처리 절차(예시)

(2) 안전보건제안 시 유의사항

- 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② 메모 정도의 간단한 제안방식도 채택
- ③ 쓰는 것이 서투른 노동자도 용이하게 기입할 수 있는 제안양식 제공
- ④ 채택한 것은 가급적 빨리 실시하고,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 필요
- ⑤ 사업장(또는 기업) 차원의 포상기준, 심사요령·기준을 마련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할 필요. 특히 등의 대상이 된 경우의 처리요령도 마련 필요
- ⑥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발상과 착안사항이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격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제안이 채용과 실현으로 연결되면, 작업장의 안전보건수준 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제안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직원과 작업장의 안전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3) 아차사고 발굴활동 추진사례

〈A기업〉 아차사고 사례 공유방

- 사내 전산망 등에 아차사고 사례 공유방을 개설하여 노동자들이 작업 중 경험한 아차사고 사례를 공유토록 하여 동종 유사사고를 방지

〈B기업〉 아차사고 발굴카드 제도

- 작업자가 업무수행 중 불안전행동이나 설비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차사고 경험을 작업장 비치된 카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 부서는 내용을 평가·포상하고 교육자료로 재구성

〈C기업〉 아차사고 사례 발표대회

- 작업 중 발생한 아차사고 사례를 주제로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팀에게 포상하고, 발표내용은 사례집으로 제작·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4) 안전보건제안 추진사례

〈L기업〉 안전보건 제안함

- 사업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는 창구로 휴게실, 화장실 등에 안전제안함을 설치·운영하여, 현실적인 안전환경 및 기타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M기업〉 잘못된 관행 찾기 운동

-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는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전 직원 대상으로 제안받은 후, 채택된 제안에 대해 개선방안 도출 회의 및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여 잘못된 안전수칙 위반을 근절

4) STOP(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

미국 듀폰(Dupont)사에서 시작한 인간의 행동중심안전관리 기법(STOP)으로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안전한 행동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안전한 행동이 이어지도록 하고 불안정한 행동은 작업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행동변화를 이끌어 사고를 예방한다.

STOP는 “㉔단계적 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㉕관리감독자 및 노동자를 숙달된 관찰자로 만들고 ㉖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㉗안전관찰 및 의사소통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 ㉘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시정하면서 안전행동은 계속 칭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㉙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동중심안전관리이다.

(1) STOP의 필수 개념

단계적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여주고 관리감독자 및 노동자를 숙달된 관찰자로 만들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다. 안전관찰 및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 불안정한 행동을 즉시 시정하고 안전한 행동은 지속적으로 칭찬함으로써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STOP은 모든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① 모든 임직 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안전프로그램
- ② 안전과 품질, 생산, 비용은 동일한 위치
- ③ 안전은 본인 각자의 책임

- ④ 노동자의 이해를 통한 동기부여가 중요
- ⑤ 안전에서 침묵은 승낙(묵인)
- ⑥ 안전은 매일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
- ⑦ 안전은 라인 전체의 책임

불안전한 행동의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경청)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규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 ② 행동의 결과를 직접 실감하지 못할 때
- ③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하거나 일깨워 주지 않아서
- ④ 여러 번 반복적인 행동으로 습관화되어서
- ⑤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어서, 괜찮아
- ⑥ 몸의 컨디션, 심리 상태가 나쁘거나 걱정이 있을 때
- ⑦ 빨리 일을 마치고 쉬고 싶을 때
- ⑧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
- ⑨ 잠깐이면 되는데

(2) STOP의 잘못된 사례

- ①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사항을 처벌에 이용
- ②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행동 개선 관리가 부족
- ③ 경영층 사이의 대화 또는 토의가 부족
- ④ 경영층 및 관리자의 참여 및 관심이 부족
- ⑤ 안전에 대한 할당량 또는 개인별 건수를 지정
- ⑥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음

(3) STOP 성공요인

STOP을 정착하려면 안전관찰을 계속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노동자들과 안전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안전활동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노동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관찰
- ② 관찰과 의사소통(칭찬, 격려)이 매우 중요

- ③ 질문을 통해 작업자 스스로 이해하고 인식이 바뀌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
- ④ 일방적인 질책이나 지적은 안됨
- ⑤ 징계시스템과 연계시키면 안되며, 고의나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은 사규(징계규정)에 따름

(4) STOP 추진사례

〈P기업〉 STOP 2

- STOP 2는 작업시작 전에 2분 동안 멈춘 상태에서 해당 작업(행동)에 있어 무슨 위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어떤 안전조치와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안전을 생각하고 확인하는 활동

〈T기업〉 일일 안전담당자

- 매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아침 작업시작 전 안전에 대한 의견을 사내 방송을 통해 피력한 후, 사업장 안전순찰을 실시하면서 사업장 위험요소 및 체험 소감을 적을 보고서를 안전부서에 제출토록 하여 자율안전 분위기를 조성

7-2. 안전보건점검

1) 작업시작 전 안전보건점검

‘작업 전 안전보건점검’은 사업장의 기계·설비 등의 물적조건에 불안전상태가 없는지 여부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하는 활동이다. 일상작업은 매일매일 작업 전, 정비·보수 등 비 일상작업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보건점검과 그것에 수반하는 보수, 개선(안전보건점검 등)을 태만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 기계·설비의 이상이 초래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1) 작업전 안전보건점검의 확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사항

- ① 각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점검의 실시기준
- ② 각 담당자들의 역할
- ③ 점검실시 시기, 방법, 개선방법, 개선결과 확인 및 실시책임자 등에 대한 절차

외부에서 반입되는 기계·설비도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데, 순찰을 통한 점검상황 확인, 미점검의 기계·설비의 사용정지, 시정지시 등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한편, 점검이 미 실시되는 경우 근본 원인과 그 재발방지조치를 확립할 필요하다.

안전보건점검은 생산라인 담당자가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작업장의 자율적인 점검활동에만 맡기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체크를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점검에 있어서 작업자로부터 담당설비 상태, 이상 유무의 청취가 중요하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보건점검의 의의를 잘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 과거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곳에 불안전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그 요인이 안전하게 제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하다.
-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불안전상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예: 레이아웃의 변경, 작업방법의 개선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작은 위험을 간과한 것이 큰 재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결함지적 뿐만 아니라, 좋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점검포인트

현장 관리감독자는 수행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점검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통제한다. 유해위험요인 및 조치내용을 해당 작업 노동자와 공유한다. 안전보건점검 포인트는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과 위험성평가, 아차사고를 통해 파악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① 기계·기구 및 설비 : 기계·기구 정상작동 유무,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유지 여부
- ② 유해위험물질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관리 여부
- ③ 작업장소 : 무너짐, 떨어짐 등으로 인한 작업장소의 안전성 확보 여부
- ④ 노동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 ⑤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위험장소, 설비, 작업별 안전보건 표지 부착
- ⑥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안전작업절차 제정 및 적정 유무
- ⑦ 안전보건 교육실시 :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여부

(4) 안전보건점검 추진사례

〈R기업〉 안전보건점검 실명 기록판

- 작업자가 작업환경에 대해 작업 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점검 실명 기록판에 점검자, 점검일자, 주요 문제점, 조치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

〈Q기업〉 부서별 교차 안전보건점검

- 매월 4일 안전보건점검의 날, 사업장 내 타 부서(또는 공장 등) 점검활동을 교차로 실시하여, 다양한 시각의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평소 확인하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파악함과 동시에 타부서의 우수 안전활동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장 전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S기업〉 노사합동 안전보건 총괄점검제

- 노사 대표가 안전보건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로, 분기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하면서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함으로써,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전사적인 의지를 임직원에게 보여줌

2) 안전보건 자체점검

안전보건 자체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공통,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체점검 항목, 그리고 법 이행결과에 대한 문서보관에 대해 자체점검표를 제안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에 대한 자체점검은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험설비 자체점검은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사다리, 통로, 추락, 기계·기구, 지게차, 리프트, 컨베이어,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로 구성되었다.

위험작업 자체점검은 화기·용접작업, 전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한 점검이고 보건위생 자체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급성독성물질, 소음, 진동, 고열·한랭, 근골격계질환, 건강관리, 응급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해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공통			
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			
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등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분기별로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1.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2.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3.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4.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1.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전담조직 구성·운영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3명 미만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외 건설사업장 → 전담조직 구성·운영 미대상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1.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2.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3.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2.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미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미대상			
2.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의 충실성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안전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적용 제외 대상(해당없음 V) -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미대상			
2. 배치된 안전보건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1.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등 적용 제외 대상 → 별도의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를 마련해야 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대상 - 도급 사업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 협의체 미대상			
2.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3. 의견청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까?			
4.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1.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도급·용역·위탁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1.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4. 기준·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및 위탁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재해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2.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2.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			
3.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1.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2.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3.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까?			
4.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지체없이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문서보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5조]			

(2)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경영자 리더십			
1.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되는 가치로 삼고 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하여 대부분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5.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6. 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8.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0.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13.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14. 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노동자의 참여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노동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노동자를 참여시킨다.			
8. 위험요인별 재해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노동자를 참여시킨다.			
9.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위험요인 파악			
1.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2.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위험을 파악한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3.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4.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5.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6.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한다.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제, LOTO (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한다.			
12.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비상조치계획 수립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3. 공장별·현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반기 1회 이상).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7.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8.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9.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한다.			
10.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11.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2.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시 안전보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평가 및 개선			
1.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노동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8.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9.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 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10. 점검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방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노동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3) 현장 점검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제조업			
1.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모든 위험기계·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4. 위험기계·기구 정비 시, 운전을 중단하고 가동 잠금장치 또는 표시판을 설치한다.			
5. 화학물질 도입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노동자와 공유한다.			
6. 화재·폭발·누출 및 질식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7.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8.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9. 고객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를 위한 신고·상담 절차를 운영한다.			
10. 노동자는 개인보호구*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다. * 방독·송기마스크, 보안경,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 건설업			
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			
3.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등을 통해 작업 전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고절차를 두고 있다.			
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조립도와 달리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10. 모든 노동자가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4) 위험설비 자체점검

(가) 작업장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1. 작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한다.			
2. 흐트러진 장소를 정리하기 위한 공구 및 도구를 제공한다.			
3. 작업장의 청소 또는 정리 작업, 오염물 처리 시 노동자가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한다.			
4.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5.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			
6. 무거운 물건 등 중량을 취급할 경우 적절한 작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7. 작업장 청소 시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분진 흡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8.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로 인해 작업장이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 수시로 청소한다.			
9.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하는 곳의 배수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10. 청소 시 발생한 오물처리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였다.			
11.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12.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3. 작업장의 출입구는 노동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사다리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노동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이동통로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용 사다리(발붙임, A형)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4.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cm 이상 올라가는 등 적절한 길이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5. 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 가 장착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6. 사다리 기동,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다.			
7. 금속사다리의 경우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부식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8. 계단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 기동의 벌어짐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9. 미끄러운 표면(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의 고정·안정화 절차를 준수한다.			
10.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에서 작업할 때 사다리와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1. 바닥과 사다리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한다.			
12. 작업 전 사다리 주위 전선, 전기설비 등 감전위험을 확인한다.			
13.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14. 사다리의 사용 높이를 임의로 높이기 위해 상자, 리프트, 그 밖에 불안정한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15.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16.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17.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 사용하지 않는다.			
18.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19. 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20. 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 내리지 않는다.			
21. 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해당 물질을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한다.			
22. 사다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수리나 재구매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 **통로·추락**

1. 사업장 내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구분)되어 있다.			
2. 통로의 바닥 또는 단부에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덮개, 방호울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통로 상부(2 m 이내) 및 바닥에 장애물이 없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4. 통로의 상부에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방호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다.			
5. 사업장내 통로,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적정 조도(75럭스 이상)를 유지한다.			
6. 상부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고정되어 있으며, 설치간격, 통로폭 등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임시로 설치한 통로(작업발판 등)의 재료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어 있다.			
8.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설치한다.			
9. 통로(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10. 작업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한다.			
11. 통로의 구조(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갱내통로, 계단 등)가 각 종류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			
12. 안전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즉시 유지보수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2. 비상시 작업장 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적절히 마련되었다.			
13. 비상구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노동자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였다.			
14. 작업장 내 비상 대피경로를 표시하고, 노동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나) 기계·기구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	-----	----

■ 기계·기구(일반)

1. 기계와 장비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모든 기계와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유지보수된다.			
3. 운전 중인 크레인·컨베이어 등에 노동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다.			
4. 회전축·기어·체인 등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였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6.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7.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였다.			
8.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9. 기계의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0. 기계 등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정지하지 않는다.			
11.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다.			
12.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지게차

1.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 경광등의 정상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백레스트 및 헤드가드가 파손되지 않았다.			
3.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관리한다.			
4. 지게차 운전원에게 작업방법, 작업 순서, 운행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5. 지게차 운전시 운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6.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7. 지게차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8. 작업장을 이동할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다.			
9. 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노동자 충돌방지를 위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갖추었다.			
10. 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11. 지게차 운행 중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12. 하역운반 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견고한 곳으로 별도로 지정한다.			
13. 지게차 작업장 이동경로에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는다.			
14.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열쇠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 리프트

1. 건물 각 층의 승강로 주위에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다.			
2. 화물반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3.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표시하였다.			
4.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5. 비상정지스위치는 돌출형(적색) 구조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6. 조작스위치는 승강로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7.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프트 스위치는 변형, 훼손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다.			
8. 고정볼트 등이 확실히 고정되고 풀림, 변형이 없다.			
9. 달기기구용 와이어로프에 소선 끊어짐이 없으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10. 달기기구용 체인에 심한 균열 또는 변형이 없고, 훼손된 체인은 즉시 교체한다.			
11. 운전스위치 버튼의 권상, 권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 작동이 일치한다.			
12. 작업노동자가 작업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13. 고장, 수리, 점검 작업 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시판을 부착하고 작업하고 있다.			
14. 운반구와 출입구 바닥 사이의 간격은 양호하다.			
15. 화물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는다.			

■ 컨베이어

1. 컨베이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2. 컨베이어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3. 보수·정비·청소 등의 작업자는 조작실 운전 담당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4. 비상정지 중 또는 사고로 정지중인 컨베이어를 재가동할 경우에 먼저 정지의 원인 및 고장 장소의 보수상황 등을 확인토록하고 있다.			
5. 작업자에게 트러블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을 교육한다.			
6. 설계 시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작업 전 컨베이어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작업표준, 취급요령, 정비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8. 노동자가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및 컨베이어의 날카로운 모서리·돌기 등은 제거 혹은 방호 조치하였다.			
9. 경사/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0. 벨트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테이크업 장치가 설치되었고,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			
11. 컨베이어 스크레이퍼, 벨트 크리너 등이 설치되고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1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체인스프로킷, 스크류 등에 노동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발생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어 있다.			
13. 테일풀리, 헤드풀리, 리턴롤러 등의 끼임점에 방호울 및 방호가드가 설치되어 있다.			
14. 컨베이어 라인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15. 컨베이어 건널다리나 점검통로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16. 컨베이어 하부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으로 통행금지, 낙하물 방지조치 등을 하고 있다.			
17. 컨베이어 양측에 보수점검을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18. 컨베이어 주변 통로는 정리정돈 되어 있다			
19. 컨베이어의 기동·정지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쉽게 조작 가능하다.			
20. 컨베이어에 물건 적재 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 노동자가 작동중인 컨베이어 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22. 컨베이어 롤러 퇴적물 제거 작업 시 설비 가동 중지 후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23. 보수·정비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프레스

1. 프레스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2. 프레스를 사용하는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등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3. 압력능력이 3.0톤 이상인 프레스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4. 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 손채내기, 가드식, 양수조작식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5. 일행정일정지 기구의 기능의 정상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6. 금형 등의 수리·점검·교체 작업 시 안전블록을 사용하고 있다.			
7. 이물질 제거, 정비·수리 시 프레스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있다.			
8.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가 급정지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9. 가공재 송급을 자동화하거나 가드를 설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10. 풋스위치 상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다.			
11. 노동자에게 귀마개,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12. 벨트, 플라이 휠 등의 덮개는 부착되어 있다.			
13. 상·하형 볼트 및 너트의 체결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4. 유압계통(배관, 호스 등)의 기름이 누유 현상을 확인한다.			
15. 프레스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크레인

1. 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한다.			
2.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3.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이 2.0톤 이상인 크레인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4. 인양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크레인을 사용하여 노동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6.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노동자가 보기 쉬운 곳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7.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8.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9.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10. 크레인의 수리·점검 시 크레인이 노동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인을 배치하고, 스톱퍼를 설치하였다.			
11.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12. 인양 중인 화물 아래로 작업자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14.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노동자를 통제한다.			
15. 노동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5) 위험작업 자체점검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화기·용접작업			
1.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공정설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였다.			
2. 화기·용접작업 장소에 노동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한다.			
3. 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4.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5.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단하는 밸브에 밸브잠금 표시 및 맹판 설치 표시를 부착한다.			
6. 화학설비 등의 내부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한다.			
8.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비산 방지조치를 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다.			
9. 화재감지사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농도를 측정한다.(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11.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12.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 전기작업			
1. 작업전로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 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3.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5.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금속재, 철재 등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있다.			
6. 휴대형 또는 이동형 전동기계의 전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7. 전기기기 외함에 접지된 접지선이 접지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접지 연속성 유무).			
8. 누전여부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9. 주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하다.			
10. 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1. 정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소작 방지를 위하여 분전반 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12. 변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였다.			
13. 변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14. 근접장소에서의 청소 등의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한다.			
15. 낙뢰위험지역에 낙뢰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였다.			
16. 피뢰침의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17.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다.			
18.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장치 등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였다.			
19.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작업(50 V초과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 VA를 넘는 경우)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20. 충전전로 등의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등을 노동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한다.			
■ 밀폐공간작업			
1. 질식위험공간에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황화수소 10 ppm 미만			
2.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치하였다.			
4. 노동자가 수행하는 밀폐공간작업이 존재한다.			
5.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였다.			
6.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7. 작업 시작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 노동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8. 산소농도,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준비/점검/사용법 숙지를 하였다.			
9.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10.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다.			
11. 관계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였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12.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노동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였다.			
13. 밀폐공간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작업 허가를 받고 있다.			
14.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6) 보건위생 자체점검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	---	-----	----

■ 유해화학물질

1.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노동자에게 교육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였다.			
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구조는 해당 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5. 노동자에게 적절한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유해화학물질 용기(소분용기 포함)에 시 물질명, 경고표시 등 내용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였다.			
8.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9.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노동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11.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노동자에게 교육한다.			
12. 취급물질에 적절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였다.			
13.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4.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절한 방폭설비를 설치하였다.			

■ 급성독성물질

1.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급성독성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2. 급성독성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노동자에게 교육한다.			
3. 급성독성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4. 노동자에게 물질취급으로 인한 위험성, MSDS,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5. 급성독성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였다.			
6.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였다.			
7. 급성독성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급성독성물질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을 미리 감지하기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9. 급성독성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10.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노동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11. 급성독성물질이 유출·누출되는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12.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방법, 응급조치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 소음

1. 소음발생 장소·설비 등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2. 소음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3.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되는 소음에 대한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소음발생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기 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6. 소음 발생원의 격리, 차폐 등 소음발생 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7.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청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노동자의 청력검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의학적 처치 등이 적절히 조치하였다.			
9. 청력보호구는 노동자의 특성과 작업장 환경, 소음발생 수준에 맞게 지급되고, 노동자에게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10. 85 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1. 청력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고판을 부착하였다.			

■ 진동

1. 진동발생 장소·설비 등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2. 진동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3.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되는 진동에 대한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진동발생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기 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6. 진동발생 공구는 적절히 유지보수가 되고 있으며,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기구는 교체하고 있다.			
7. 국소진동공구 사용 등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8. 노동자의 건강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의학적 처치를 실시한다.			
9.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다.			
10. 작업자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고 있다.			

■ 고열·한랭

1. 열원이 발생하거나 취급하는지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2. 고열(한랭)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3.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고열(한랭)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4.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열원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노동자를 배치하기 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6. 열원의 격리와 작업장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7. 작업의 강도에 따른 휴식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8. 보유중인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이다.			
9. 비상 시 온도를 낮추거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0.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다.			
1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에 관계 노동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12. 고열 또는 한랭 작업 등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근골격계질환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 있다.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4. 부담작업 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 항목	네	아니오	비고
5.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서서 일하는 노동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9.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 건강관리

1.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2.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3.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과 노동자를 파악하고 있다.			
4. 노동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5.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7. 노동자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8. 노동자의 작업 배치시 노동자 개인의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배치하였다.			
9.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10. 작업장의 조도와 온·습도는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11. 노동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응급조치

1.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응급상황 발생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4. 응급상황 발생시 노동자들은 신고체계와 보고체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응급처치함, 구조장비 등 비상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6.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다.			
7. 응급상황이 완료된 후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8. 고용노동부 활용서식 모음

☞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1)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 추진계획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전사 목표	목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중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 개정	계획	○	○	○	○	변경 시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 부서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작업 전 미팅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 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전 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 부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	1회/반기	안전	-			
	실적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2)

작성팀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자		
작성일자		

중요 목표	세부 목표(Target)														소요 예산	검토			
	세부 항목	추진계획	성과 지표	담당자	구분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 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끼임 사고 위험 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안전 보건 시정 조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작업 전 안전 미팅 (TBM) 실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혹해 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혹해 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예시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C)	발 화 점 (°C)	증기압 (20°C,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mg/kg Rat, LD50 15800mg /kg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m³	1m³	

-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

단위작업 장소	작업내용	위험 코드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형태	관련 협력 업체	위 험 성	비고
P1 구역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H-P1-01	지게차 (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작업		○○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급성중독	有	고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세척실	부품 세척작업		세척조 (00000)	트리클로로메탄 ()	급성중독	有	고	*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대상 * 방독마스크 밀착도 검사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http://kras.kosha.or.kr>)

담당	부장	대표

작업공정명 :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 '22-03-1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강도)					
원료 입고	기계적 요인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99조 [안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1	2	2 (낮음)	-	-	-	-	-
원료 입고	전기적 요인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3	2	6 (높음)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Bonding /Grounding)	2 (낮음)	'22-05-30		홍길동
원료 입고	화학적 (물질) 요인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69호 [화염 방지기의 설치 등]	-	2	3	6 (높음)	1. 안전 작업허가 절차 준수 2. 화염 방지기설치	3 (보통)	'22-03-30	'22-03-25	서비스
원료 입고	화학적 (물질) 요인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작업자 교육	2	3	6 (높음)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3 (보통)	'22-04-30		황건설
원료 입고	화학적 (물질) 요인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애 발생 우려	안전보건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 미착용	2	2	4 (보통)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2 (낮음)	'22-03-31	'22-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예비	• 예비비		

☞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평가표(안)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 보건총괄 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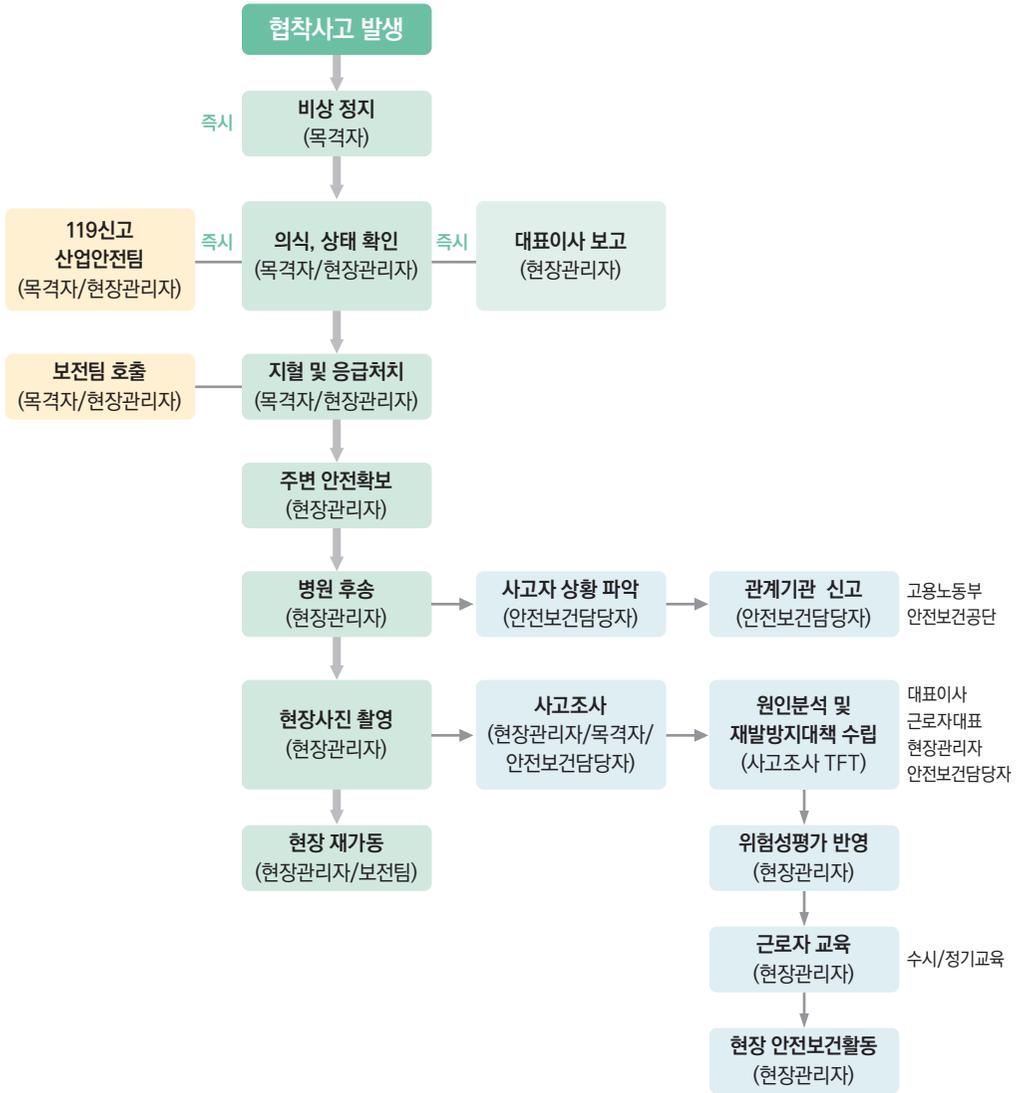
* 평가 주기: 반기 1회 이상 평가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안전 관리자 (산안법 제 1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 관리자 (산안법 제 1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주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 보건의 (산안법 제2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보고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I.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 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 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input type="checkbox"/> 중량물작업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작업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 <input type="checkbox"/> 굴착작업 <input type="checkbox"/> 전기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작업
-----------------	--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간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서 (협력업체 포함)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 (내용 : _____)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인)
허가관리 부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가내용				
	허가자	소속	직책	성명	(인)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반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사고명				사고일시	
인적 피해	소속:		성명:		직급:
물적 피해					
사고장소		상해부위		사고형태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내용					
의사/외부 전문가 소견					
재발방지 대책					
기타내용 사고조사 사진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규/ 노출기준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 확인
	분류	원인	유해· 위험요인			NO	세부 내용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작업특성 요인												
작업환경 요인												

☞ 아차 사고 보고서 양식 예시

작업명		등급	A, B, C
작업내용			
사고내용			
발생원인			
예방대책 (조치내용)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 아차 사고 등급 분류기준

등급	위험정도	조치
A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 중대재해 발생과 동일시 - 작업 중단 후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B	재해(사고)발생 시 중상* 또는 시설물 부분 파손 및 작업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재해 발생과 동일시 - 임시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행
C	재해(사고)발생 시 경상** 또는 당해 시설물의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 현 상태로 작업은 가능하나, 교육 시행 등의 안전관리 조치

* 중상: 하루 이상 입원 및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신체활동 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

** 경상: 사망, 중상을 제외한 부상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연간 교육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교육 구분			교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 보건	공정 안전	수급 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30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 교육							○					2명	집체(내부)		
7		○		공정위험성평 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2022

발 행 인 김동명

발 행 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전 화 02-6277-0000

팩 스 02-6277-0120

발 행 일 2022년 4월

디자인편집 디프넷

www.inochong.org

〈비매품〉